

2027

건축법령 핵심

건축기사, 건축산업기사

엠북 건축/지적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기출 문제 지문 중심
- ★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
- ★ 1시간 18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
도서명 : 건축법령 핵심

ISBN : 979-11-7393-335-6

발간일 : 2026-08-24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11,000원



건축법령 핵심

[목차]

제1편 건축법(p4)

제2편 건축물방화구조규칙(p68)

제3편 건축물설비기준규칙(p89)

제4편 주차장법(p101)

제5편 국토계획법(p121~150)

[약어]

- 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
- 근생은 근린생활시설
-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

[비고]

붉은색은 건축기사, 건축산업기사 등 3회 이상
출제

굵은 붉은색은 5회 이상 출제

제1편 건축법

[목차]

제1장 총칙

제2장 건축물의 건축

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

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

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

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

제7장 특별건축구역 등

제8장 보칙

[약어/용어]

- 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- 시군구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자치군의 구청장
- 허가권자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(단, 도지사 제외)

제1장 총칙

1. 목적

- 건축물의 안전/기능/환경, 미관 향상
- 공공복리 증진 등

2. 정의

1) 건축물

- 토지 정착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
- 지하/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, 공연장, 점포, 차고, 창고

2) 지하층

- 바닥이 지표면 아래

- 바닥에서 지표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/2 이상

3) 거실은 거주, 집무, 작업, 집회, 오락 등에 사용

4) 주요구조부 (내/기/바/보/지/주)

- 내력벽, 기둥, 바닥, 보, 지붕틀, 주계단

- 단, 사이 기둥, 최하층 바닥, 작은 보, 차양, 옥외 계단 제외

5) 건축은 신/증/개/재/이

- 대수선은 건축 아님

가) 신축

나) 증축

- 건축물 있는 대지에 건축면적, 높이 등 늘림
- 피난계단증설은 증축아님

다) 개축

- 건축물 전부/일부 해체, 종전 규모
- 내력벽, 기둥, 보, 지붕틀 중 셋 이상 해체

라) 재축

- 천재지변 등 재해로 건축물 멸실시 그
- 대지에 연면적 등을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
- 축조

마) 이전

- 주요구조부를 해체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

위치로 옮김

6) **대수선**은 증축/개축/재축이 아니고,

- 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 수선
- 기둥이나 보 세 개 이상 수선/변경
- 특별피난계단 변경
- 다세대 세대간 경계벽 증설 등

7) **리모델링**

- 건축물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
- 대수선, 건축물 일부 증축/개축
- 단, 신축 제외

8) 도로

- 보행/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
-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도로인지 판단하는 기준
-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0m 미만은 너비 3m 이상 도로

9) 건축주

- 공사 발주 또는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공사

10) 설계도서

- 공사용 도면, 구조 계산서, 시방서

- 1)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

이상

-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또는 높이 200m

이상

2) 실내건축

- 칸막이로 구획 또는
- 벽지, 천장재, 바닥재, 유리나
-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, 창호, 전기, 배수/환기
시설 등 설치

3) 발코니

- 건축물 내외부 연결 완충공간
- 전망/휴식 목적
-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 설치

4) 한옥

- 기둥/보와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

5) 다중이용 건축물

가) 바닥 합계가 5천 이상인

(문/종/판/여/병/관)

- 문화집회(단, 동식물원 제외)

- 종교, 판매, 여객용 운수, 종합병원

- 관광숙박시설 또는

나) 16층 이상

6)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관광휴게시설 등

7) 특수구조 건축물

-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고, 보/차양 등이 외벽(외벽 없으면 외곽 기둥)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

3. 건축물의 용도: 단위는 제곱미터

1) 단독주택 (단/중/가/공)

- 단독주택

- 다중주택

- 다가구주택(19세대 이하)

- 공관

- 다중주택/다가구는 3층, 바닥면적 합계 660

이하

2) 공동주택(아/연/세/기)

- 아파트는 주택사용 층수 5층 이상
- 연립은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, 4층 이하
- 다세대는 660 이하, 4층 이하
- 기숙사

(기숙사)

- 구분소유된 개별 실은 제외
- 공동취사 세대 수가 전체의 50% 이상
- 일반기숙사는 학교/공장의 학생/종업원 용
- 학생복지주택 포함

3) 1종근생

- 서점은 1천 미만 1종, 이외 2종
- 휴게음식점/제과점은 300 미만 1종, 이상 2종

- 탁구장/체육도장은 500 미만 1종, 이상 운동시설

- 파출소, 우체국 등은 1천 미만 1종, 이상 공동업무시설

- 이용원, 치과의원, 의원, 조산원, 산후조리원, 마을회관 등

4) 2종근생

- 종교집회장은 500 미만 2종, 이상 종교시설
- 500 미만 극장